

# 2015. 교육훈련기관 교육경비 지급기준

□ 근거 : 2015. 교육여비 지급기준 변경계획(부구청장 방침 164호, 15.9.14)

가. 교육비 :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 교육수료 여부 확인하여 사후 정산  
나. 교육여비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20,000)	숙박비	식비	
근무지 내 (서울)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미지급	○입·퇴교일 전액 ○기타일 - 합숙 미지급 - 비합숙 5할	미지급	미지급	
	그외 기관		합숙	○입·퇴교일 전액 ○기타일 미지급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비합숙	○입·퇴교일 전액 ○기타일 5할	미지급	미지급
근무지 외	합숙	실비 (여비조례 별표1)	○입·퇴교일 전액 ○기타일 미지급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비합숙		○입·퇴교일 전액 ○기타일 5할	정액 (제2호 : 3만원)	미지급	

1.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상기 기준 적용, 연찬회·회의 등은 지급제외
2. 근무지 외 교육훈련시에도 자택에서 출퇴근 가능한 경우 숙박비 미지급
3. 위 기준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름

□ 동작구 여비조례 별표1(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구청장은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